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2024. 2.



차례 CONTENTS

I.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1
1. 추진배경	1
2. 사업목적	1
3. 근거	1
4. 시범사업 개요	2
II. 추진체계 및 운영	6
1. 수행 주체별 역할	6
2. 추진 절차도	7
III.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8
1. 요양급여 기준	8
2. 산정지침	9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13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4

차례 CONTENTS

IV.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20
1. 정보시스템 접속	20
2. 대상자 등록 및 조회	21
3. 점검서식 작성 및 세부 방법	23
4.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30
5. 공지사항	30
V.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31
VI. 시범사업 효과평가	34
 [별지 서식] 제1호~제7호	36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47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 I.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 II. 추진체계 및 운영
- III.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 IV.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 V.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 VI. 시범사업 효과평가

I.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1 추진배경

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한 대응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가 집에서 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환자 관리가 어려운 상황

나.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 개선 필요

- 병원이 아닌 자택에 있는 환자에게는 의료적 관리에 대한 두려움과 감염 등 위험부담이 존재하므로 관리 부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사업목적

가. 재택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입원 및 질환 악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환자 삶의 질 제고

나.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마련

3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시범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 의료인의 방문은 불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리



[그림]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념도

나. 사업대상

- 1) (대상 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2) (대상자)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 진단기준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 중 제1형 당뇨병과 동일

◆ (진단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 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체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0.x	인슐린-의존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다. 서비스 제공인력

1)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하 '재택의료팀' 이라 함)

- 대상 환자가 자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 재택의료팀은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재택의료팀의 1인 이상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한다.

* 교육전담인력: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를 포함한 교육 관련 업무 외에 병동 환자 관리 등의 타 업무를 하지 않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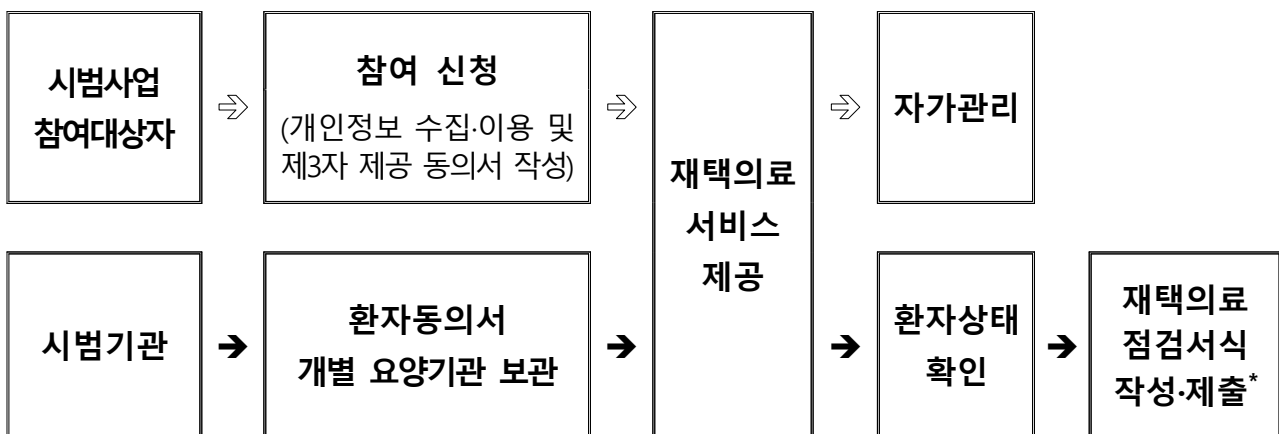
2) 재택의료팀 필요인력 및 자격

- 의사는 2년 이상 경력의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 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를 말한다.
- 간호사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를 말한다.

3)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및 인력현황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의 [현황신고·변경]에서 팀운영 신고 완료 후 인력현황 신고
 - (팀운영) 시설현황>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신규신고
 - (팀인력) 인력현황> 해당 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신고

라.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절차



* 점검서식 작성·제출방법: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마.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내용

- (교육상담료 I) 혈당 조절 등 안전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질환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해 전문적·심층적 교육 제공
- (교육상담료 II) 자가 혈당 측정 및 인슐린 투여 방법 등 질환·건강 관리에 대해 재택의료팀이 환자에게 교육·상담 제공

<교육상담료 I, II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재택의료팀이 수립한 교육 계획에 따라 환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교육 ✓ 당뇨병 이해 및 관리방법 (합병증,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 ✓ 혈당측정 방법 및 기기사용법 (측정결과 해석 등) ✓ 인슐린 투약 및 용량 조절 (투약방법, 주의사항 등) ✓ 저혈당 및 고혈당 대처법 (심한 저혈당, 특별한 경우 혈당관리 등) ✓ 식생활 / 영양 / 일상생활 관리 (탄수화물 계산, 심리·사회적지지 등)

- (환자관리료) 혈당 측정 정보 등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하고, 이상 수치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점검 및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 제공

<환자관리료 점검 및 서비스 세부내용>

세부 내용
- 환자와 전화상담 등을 통해 혈당 및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및 관리 서비스 제공 ✓ 혈당 모니터링 ✓ 혈당 관리 방법 (인슐린 주사, 인슐린 용량 조절, 기기사용법 등) ✓ 저혈당 및 고혈당 대처 방법 (특별한 경우의 혈당관리 등) ✓ 일상생활 관리 (식사관리, 운동, 합병증 예방 관리 등) - 교육상담시 제공한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확인 및 반복교육 실시 - 예상하지 못한 환자의 상태변화를 확인한 경우 내원할 수 있도록 안내

바. 시범사업 기간

- '20.1.1. ~ '25.12.31.

※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

Ⅱ. 추진체계 및 운영

1 수행 주체별 역할

가.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추진 총괄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

-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시범사업 운영지침 관리, 요양급여비용 심사·점검, 시범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다. 시범사업 협의체

- (구성) 보건복지부, 심평원, 관련 학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역할) 시범사업 추진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등 논의

라. 시범기관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점검서식 제출 및 비용 청구 등
- 시범사업 안내 및 제공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 요양급여비용 지급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각 기관별 세부업무 수행

2 추진 절차도

단계	사업절차	주관기관
시범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신청 및 접수	보건복지부 심평원
필요 시	시범사업 추진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등 논의	시범사업 협의체
시범기관 선정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등록	시범사업 기관 등록	심평원
시범사업 수행	대상 환자 시범사업 참여 신청 (시범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환자등록)	시범기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시범기관
자료제출 및 급여비용 청구·지급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점검서식 등 제출	시범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범기관
	요양급여비용 지급	공단
사업평가	사업추진 결과 및 실적보고	심평원
	시범사업 효과평가	보건복지부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1 요양급여 기준

가. 요양급여의 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나. 급여비용의 부담

- 본 지침 'Ⅲ-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의 항목에 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100분의 10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특정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규정을 따른다.

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이하 '재택의료 관리료'라 함)

- 1) 재택의료 관리료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를 작성한 환자에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2) 재택의료 관리료는 교육상담료 I, 교육상담료 II, 환자관리료로 구분한다.
- 3) 교육상담료 I과 환자관리료는 외래에서, 교육상담료 II는 입원 또는 외래에서 산정한다.
- 4) 재택의료 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및 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 6)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은 「의료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면허·자격 범위 내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교육상담료

- 1) 교육상담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에게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질병 진행 상황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 2) '교육상담료 I'은 재택의료팀의 의사가 외래에서 1인의 환자를 1대 1로 회당 최소 10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연간 6회 이내로 산정(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 대상자 등록일자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이면서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기연도에 한해 연 8회 이내로 산정한다.
- 3) '교육상담료 II'는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이 입원 및 외래에서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기기사용법, 질환·건강관리 등에 대해 회당 최소 3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연간 8회 이내로 산정(외래는 1일 2회까지 산정)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 대상자 등록일자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 초기연도는 연 12회 이내로 산정하고, 차기연도부터는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연 10회 이내로 산정한다.
- 4) 시범기관은 교육상담을 제공한 후에는 교육상담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상담료 I 점검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교육상담료 II 점검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환자관리료

- 1)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질환관리 서비스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업무 등을 포함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월* 1회 산정한다.

* 원칙적으로 '월' 단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가) 재택의료팀은 월 2회 이상 환자의 임상수치 및 이상징후 발생 유무 등 환자상태를 점검하여 확인하고, 환자상태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환자관리 서비스(이상징후 발견 시 환자에게 정보제공, 내원 안내 등)를 제공한다.
 - (나) 환자가 자가관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 인지 시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히 안내한다.
 - (다) 환자의 임상수치, 이상징후 발생유무,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 서비스 등을 기록한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환자관리료'의 실시인력 기준은 교육상담료Ⅱ의 기준과 동일하다.

라. 서비스 세부 모형

구 분	교육상담료																															
세부구분	교육상담료 I		교육상담료 II																													
실시인력	의사		재택의료팀 (의사, 간호사, 영양사)																													
교육내용	전문적·심층적 교육		질환·건강관리 교육																													
실시횟수 및 시간	<table><tr><td rowspan="3">초기연도</td><td colspan="2">만 19세 미만</td><td rowspan="3">만 19세 이상</td></tr><tr><td>인슐린 자동주입기</td><td>인슐린 주사</td></tr><tr><td>연 8회</td><td>연 6회</td></tr><tr><td rowspan="3">차기연도</td><td>인슐린 자동주입기</td><td>인슐린 주사</td><td rowspan="3">연 6회</td></tr><tr><td>연 6회</td><td>연 6회</td></tr></table> (매회 10분 이상)		초기연도	만 19세 미만		만 19세 이상	인슐린 자동주입기	인슐린 주사	연 8회	연 6회	차기연도	인슐린 자동주입기	인슐린 주사	연 6회	연 6회	연 6회	<table><tr><td rowspan="3">초기연도</td><td colspan="2">만 19세 미만</td><td rowspan="3">만 19세 이상</td></tr><tr><td>인슐린 자동주입기</td><td>인슐린 주사</td></tr><tr><td>연 12회</td><td>연 12회</td></tr><tr><td rowspan="3">차기연도</td><td>인슐린 자동주입기</td><td>인슐린 주사</td><td rowspan="3">연 8회</td></tr><tr><td>연 10회</td><td>연 8회</td></tr></table> (매회 30분 이상)		초기연도	만 19세 미만		만 19세 이상	인슐린 자동주입기	인슐린 주사	연 12회	연 12회	차기연도	인슐린 자동주입기	인슐린 주사	연 8회	연 10회	연 8회
초기연도	만 19세 미만			만 19세 이상																												
	인슐린 자동주입기	인슐린 주사																														
	연 8회	연 6회																														
차기연도	인슐린 자동주입기	인슐린 주사	연 6회																													
	연 6회	연 6회																														
	초기연도	만 19세 미만		만 19세 이상																												
인슐린 자동주입기		인슐린 주사																														
연 12회		연 12회																														
차기연도	인슐린 자동주입기	인슐린 주사	연 8회																													
	연 10회	연 8회																														
	수 가 (24년 기준)	41,970원 환자 본인 부담률 10% 적용		26,440원 환자 본인 부담률 10% 적용																												

구 분	환자관리료	
실시인력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환자관리 서비스	· 임상정보 확인: 혈당측정 방법, 혈당측정 결과 등 · 대상자 상태 확인: 주요 문제 현황 및 합병증 발생 여부 등 · 서비스 제공: 올바른 질병 관리 수행, 합병증 예방 등 종합적 관리 · 정보시스템 입력: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전화, 문자 등)으로 환자 임상정보, 환자상태 등 확인하고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	
실시횟수	월 2회 이상의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월 1회 산정	
수 가 (24년 기준)	28,360원 환자 본인 부담 면제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병원 점수당 단가: '24년 81.2원 기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가. 교육상담료		
	IB610	(1) 교육상담료 I	516.82	41,970
	IB611	주. 인슐린자동주입기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516.82	41,970
	IB620	(2) 교육상담료 II	325.63	26,440
	IB621	주. 인슐린자동주입기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325.63	26,440
	IB630	나. 환자관리료	349.26	28,360

4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함

가. 청구원칙

- 1)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 2) (청구 시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 3)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과 비시범사업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 4) (명세서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내역(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은 분리하여 의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연이어서 각각 작성한다.
- 5) (특정내역 기재)
 - 가)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1”(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기재하여 청구한다.
 - 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본 시범사업 특정기호(S021)와 같이 기재하여 청구한다.

나. 명세서 작성요령

1) 일반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요양급여일수	☐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입원일수, 총내원일수	☐ 입원 또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다만, 동일 날 시범사업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총내원일수를 "0"으로 기재

2) 상병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상병분류기호	☐ 통계청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되, 주상병은 반드시 첫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 - 시범사업 명세서는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에 1형 당뇨병 상병 (상병코드 E10.x) 기재
내원일자, 당월요양개시일	☐ (내원일자)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 일자를 기재한다. - 교육상담료의 경우 내원한 일자를 기재한다. - 환자관리료 의 경우 환자별 매월 두 번째 환자관리를 실시·기록한 일자를 기재한다. ☐ (당월요양개시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경우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 진료를 위하여 그 달에 최초 입원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단,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 시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최초 진료일자를 기재

3) 명세서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 (진료내역)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 (특정내역)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1"을 기재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관련 특정기호를 같이 기재한다.

항목	세부작성요령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 (교육상담료 I)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의사가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1) '교육상담료 I'을 시행 후, 청구하는 경우																																																																		
	<table><tr><th>항</th><th>목</th><th>코드 구분</th><th>코드</th><th>품명</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r><tr><td>01</td><td>03</td><td>1</td><td>IB610</td><td>교육상담료 I</td><td>41,970</td><td>1</td><td>1</td><td>41,970</td></tr><tr><td colspan="9">특정내역기재란</td></tr><tr><td colspan="2">발생단위구분</td><td colspan="2">줄번호</td><td colspan="2">특정내역구분</td><td colspan="2">특정내역</td></tr><tr><td colspan="2">1</td><td colspan="2"></td><td colspan="2">MT002</td><td colspan="2">S021</td></tr></table>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품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610	교육상담료 I	41,970	1	1	41,97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21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품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610	교육상담료 I	41,970	1	1	41,97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21																																																												
	(예시2) 산정특례 대상자에게 '교육상담료 I'을 시행 후, 청구하는 경우																																																																		
	<table><tr><th>항</th><th>목</th><th>코드 구분</th><th>코드</th><th>품명</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r><tr><td>01</td><td>03</td><td>1</td><td>IB610</td><td>교육상담료 I</td><td>41,970</td><td>1</td><td>1</td><td>41,970</td></tr><tr><td colspan="9">특정내역기재란</td></tr><tr><td colspan="2">발생단위구분</td><td colspan="2">줄번호</td><td colspan="2">특정내역구분</td><td colspan="2">특정내역</td></tr><tr><td colspan="2">1</td><td colspan="2"></td><td colspan="2">MT002</td><td colspan="2">S021</td></tr><tr><td colspan="2">1</td><td colspan="2"></td><td colspan="2">MT002</td><td colspan="2">V193</td></tr><tr><td colspan="2">1</td><td colspan="2"></td><td colspan="2">MT014*</td><td colspan="2">0117123***</td></tr></table>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품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610	교육상담료 I	41,970	1	1	41,97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21		1				MT002		V193		1				MT014*		0117123***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품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610	교육상담료 I	41,970	1	1	41,97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21																																																												
1				MT002		V193																																																													
1				MT014*		0117123***																																																													
*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산정특례등록번호(10자리)를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4)에 기재																																																																			

항목

세부작성요령

1형당뇨병환자재택의료관리료

□ (교육상담료Ⅱ)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재택의료팀이 기기사용법, 질환·건강관리 등에 대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1) '교육상담료Ⅱ'를 시행 후, 청구하는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품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620	교육상담료Ⅱ	26,440	1	1	26,44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21	

(예시2) 산정특례 대상자에게 '교육상담료Ⅱ'를 시행 후, 청구하는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품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620	교육상담료Ⅱ	26,440	1	1	26,44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21	
1					MT002		V193	
1					MT014*		0117123***	

*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산정특례등록번호(10자리)를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4)에 기재

(예시3) '교육상담료Ⅱ'를 외래에서 1일 2회 시행 후, 청구하는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품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620	교육상담료Ⅱ	26,440	2	1	52,88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21	

항목	세부작성요령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 (환자관리료) 시범기관에서 등록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예시) '환자관리료'를 시행 후, 청구하는 경우																		
	<table><tr><th>항</th><th>목</th><th>코드 구분</th><th>코드</th><th>품명</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r><tr><td>01</td><td>03</td><td>1</td><td>IB630</td><td>환자관리료</td><td>28,360</td><td>1</td><td>1</td><td>28,360</td></tr></table>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품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630	환자관리료	28,360	1	1	28,360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품명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630	환자관리료	28,360	1	1	28,36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21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2	특정기호 (*)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S021” 기재 ◆ 기재형식: X(4) (예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MT002 S021

다.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1) 보완청구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평원에서 심사 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2) 추가청구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3) 보완·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IV.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1 정보시스템 접속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HIRA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업무안내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서식관리	통계	Agent 가이드	샘플
	- 수가 시범사업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급성기 기관)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연계 기관)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 동네의원-경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 재택의료 시범사업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나. 상단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선택

※ Chrome을 통한 접속 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로그인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가능

2 대상자 등록 및 조회

- 대상자 등록을 우선 완료하여야, 대상자 등록 내역 확인 및 점검 서식 작성 가능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인쇄 ▶ ▶ ▶

시범사업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등록일자: 2023-08-21 ~ 2023-11-21 환자성명: _____ 수진자 일련번호: _____

대상자 조회

대상자일괄등록 대상자등록 액셀다운 (총 0 건)

연번	수진자 정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진자일련번호	환자명	등록일자	차수년도	생년월일	성별	교육상담1	교육상담2	환자관리

가. 대상자 등록

1) 대상자 개별 등록

- **대상자등록** 버튼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환자명, 등록일자 입력 후 저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정수(○○○○○○○-○○○○○○○○) 입력
 - (환자명) 대상자의 이름을 공백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숫자나 특수기호 등은 입력 불가능
 - (등록일자) 연월일(yyyy-mm-dd)로 기재 또는 달력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 등록일자: [별지 제6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인쇄 ▶ ▶ ▶

시범사업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등록일자: 2020-01-01 ~ 2024-01-01 환자성명: _____ 수진자 일련번호: _____

대상자 조회

대상자일괄등록 대상자등록 액셀다운 (총 4 건)

연번	수진자 정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진자일련번호	환자명	등록일자	차수년도	생년월일	성별	교육상담1	교육상담2	환자관리

대상자 등록

대상자 등록

1. 대상자 정보

주민번호: _____

환자명: _____

등록일자: _____

저장 닫기

2) 대상자 일괄 등록

- **대상자일괄등록** ⇨ **서식다운로드** 버튼 클릭> 다운받은 엑셀 양식에 해당 내용을 입력 > 파일 저장

- **대상자 업로드** 클릭 후 업로드 파일 선택 ⇨ 내용 확인 후 저장

나. 대상자 조회

- 해당 조건별로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시 대상자 등록 내역 조회 가능

다. 대상자 삭제

- 최종 제출된 서식이 없는 경우 삭제 가능하며, **삭제** 버튼 클릭 시 삭제 가능

3 점검서식 작성 및 세부 방법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연번	수진자일련번호	환자명	등록일자	차수년도	생년월일	성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교육상담1	교육상담2	환자관리	교육상담1	교육상담2	환자관리	교육상담1	교육상담2	환자관리
1	202112030001	테스트	2021-11-01	3	000001	남	0	0	0	0	0	0	0	0	0

가. 점검서식 조회 및 신규작성

- 해당 조건별 입력 후, **조회** 클릭 시 대상자 등록 내역 조회 가능
 - 대상자별 차수연도, 제출 완료된 점검서식 횟수 조회 가능
 - 대상자 등록 후 교육상담 I, 교육상담 II, 환자관리 실시횟수 클릭 시 해당 점검서식 신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서식별 작성 가능 횟수를 충족한 경우, 해당란이 비활성화 되며 추가 서식 작성 불가능
 - 점검서식 작성 후 저장한 내용은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화면에서 조회·수정 및 최종 제출 가능하며, 최종제출 시 수정 및 삭제 불가
 - 점검서식 **엑셀업로드**를 원하는 경우,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화면에서 **엑셀업로드** 가능
 - **엑셀업로드** > 제출서식 선택 > **엑셀다운로드** > 다운받은 엑셀 양식에 해당 내용 입력 및 저장 > 제출서식 선택 > **엑셀업로드** > 업로드 파일 선택 > **저장** > **최종제출** 클릭하여 제출
 - 교육상담 I, 교육상담 II 및 환자관리 서식별로 **엑셀업로드*** 필요
- *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엑셀업로드 불가

나. 교육상담료 I·II 점검서 작성 요령

- 점검보고서 작성 후 임시저장 가능하며, 최종제출 시 삭제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최종제출 전, 반드시 점검서식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교육상담1		* 임시 저장 후 최종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식작성이 완료되면 임시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A. 대상자 정보					
1. 성명	테스트	2. 주민등록번호	000001-3*****	3. 등록일자	20211101
4. 연령	만 23세	※등록일자 기준			
교육상담2		* 임시 저장 후 최종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식작성이 완료되면 임시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A. 환자 정보					
1. 환자 성명	테스트	2. 주민등록번호	000001-3*****	3. 등록일자	20211101
4. 입원 외래 구분	☐ 입원 ☐ 외래	5. 연령	만 23세	※등록일자 기준	

- ➡ A. 대상자 정보는 등록된 정보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 ➡ 교육상담2는 A4. 입원 및 외래 구분하여 선택

B. 임상 정보			
1. 혈당 관리	1-1. 혈당측정 (종복 선택 가능)	☐ 1) 자가 혈당측정 ☐ 2) 연속혈당측정기(간헐적) ☐ 3) 연속혈당측정기(실시간)	
	1-2. 인슐린 투여 방법	☐ 인슐린 주사(단독) ☐ 인슐린자동주입기 ☐ 1) 인슐린 주사 ☐ 2) 인슐린자동주입기(일반형) ☐ 3)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 ② 또는 ③ 필수선택	
2. 당화혈색소 (최근 검사)	2-1. 시행일		
	2-2. 검사결과	%	

- ➡ B1. 대상자의 주된 혈당 관리 방법을 모두 선택
 - B1-1. 주된 혈당측정 방법을 모두 선택
 - B1-2. 주된 인슐린 투여 방법 중 택일하여 선택
 - 인슐린자동주입기 선택 시 주된 투여 방법을 모두 선택
- ➡ B2. 가장 최근에 시행한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입력
 - B2-1. 검사를 시행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로 기재 또는 달력 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 B2-2.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작성

교육상담1				
C. 교육 관련 사항				
1. 교육일자 및 회차	1-1. 실시일	-- --	1-2. 시행연도	☒ 초기연도 ☐ 차기연도
			1-3. 회차	2회
2. 교육자 정보	2-1. 직종	☐ 의사		
	2-2. 성명	2-3. 면허번호	2-4. 전문과목	2-5. 자격번호
	Q			

교육상담2				
C. 교육 관련 사항				
1. 교육일자 및 회차	1-1. 실시일	-- --	1-2. 시행연도	☒ 초기연도 ☐ 차기연도
			1-3. 회차	1회
2. 교육자 정보	2-1. 직종	☐ 의사 ☐ 간호사 ☐ 영양사		
	2-2. 성명	2-3. 면허번호	2-4. 전문과목	2-5. 자격번호
	Q			

➡ C1. 교육일자 및 회차

C1-1. 교육을 시행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로 기재 또는 달력 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C1-2. 시행연도 정보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C1-3. 해당 교육회차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 C2. 교육자 정보

C2-1. 교육자 직종 선택 후, 2-2. 성명 버튼 클릭하여 교육·상담을 시행한 재택의료팀 인력* 선택

* 교육 실시일 기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 된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인력이 조회됨

C2-3. ~ C2-5. 선택된 재택의료팀 인력의 정보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교육상담1	
C. 교육 관련 사항	
3. 교육대상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
4. 교육상담 내용 문항별 중점선택 가능 (기타 내용 최대 500자)	☐ 1) 당뇨병 이해 및 관리방법(합병증,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 ☐ 6) 기타 ☐ 2) 혈당측정 방법 및 기기사용법(측정결과 해석 등) ☐ 3) 인슐린 투약 및 용량조절(투약방법, 주의사항 등) ☐ 4) 저혈당 및 고혈당 대처법(심한 저혈당, 특별한 경우 혈당관리 등) ☐ 5) 식생활 / 영양 / 일상생활 관리(탄수화물 계산, 심리·사회적지지 등)
5. 소요시간	분 99분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6. 교육자료 제공 여부	☐ 제공 ☐ 미 제공
7. 교육내용 이해정도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8. 기타 기재 사항 (최대 500자)	선택기재

교육상담2	
C. 교육 관련 사항	
3. 교육대상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
4. 교육상담 내용 문항별 중점선택 가능 (기타 내용 최대 500자)	☐ 1) 당뇨병 이해 및 관리방법(합병증,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 ☐ 6) 기타 ☐ 2) 혈당측정 방법 및 기기사용법(측정결과 해석 등) ☐ 3) 인슐린 투약 및 용량조절(투약방법, 주의사항 등) ☐ 4) 저혈당 및 고혈당 대처법(심한 저혈당, 특별한 경우 혈당관리 등) ☐ 5) 식생활 / 영양 / 일상생활 관리(탄수화물 계산, 심리·사회적지지 등)
5. 소요시간	분 99분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6. 자료제공 여부	☐ 제공 ☐ 미 제공
7. 교육내용 이해정도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8. 기타 기재 사항 (최대 500자)	선택기재

- ➡ C3. 교육상담을 제공한 대상을 체크하되 ‘환자 및 보호자’ 선택 시,
‘환자와의 관계’를 콤보박스에서 선택
* (환자와의 관계) 부모/ 자식/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간병인/ 기타
- ➡ C4. 시행한 교육상담의 내용을 모두 선택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교육한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
- ➡ C5. 실제 교육한 시간을 분 단위로 정수 입력
교육상담 I 최소 10분, 교육상담 II 최소 30분 이상 입력
- ➡ C6. 교육자료 제공 여부에 따라 항목 체크
- ➡ C7. 교육상담 시행 후 판단되는 대상자의 교육내용 이해정도를 체크
- ➡ C8. 기타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

다.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 점검보고서 작성 후 임시저장 가능하며, 최종제출 시 삭제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최종제출 전, 반드시 점검서식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자관리						* 임시 저장 후 최종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식작성이 완료되면 임시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A. 대상자 정보						
A.1 성명	홍길동	A.2 주민등록번호	151201-2*****	A.3 등록일자	20200221	

- ☞ A1~A3. 등록된 대상자 정보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환자관리			
B. 임상 정보			
1. 혈당관리	1-1. 혈당측정 (중복 선택 가능)	☐ 1) 자가 혈당측정 ☐ 2) 연속혈당측정기(간헐적) ☐ 3) 연속혈당측정기(실시간)	
	1-2. 인슐린 투여 방법	☐ 인슐린 주사(단독) ☐ 인슐린자동주입기	
		☐ 1) 인슐린 주사 ※ ② 또는 ③ 필수선택 ☐ 2) 인슐린자동주입기(일반형) ☐ 3)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 ☞ B. 1회 차 및 2회 차 관리 내용을 종합하여

대상자의 주된 혈당 관리 방법을 모두 체크

B1-1. 주된 혈당측정 방법을 모두 선택

B1-2. 주된 인슐린 투여 방법 중 택일하여 선택

인슐린자동주입기 선택 시 주된 투여 방법 모두 선택

C. 1회차 관리				
1. 시행일자	- -			
2. 관리자 정보	2-1. 직종 ☐ 의사 ☐ 간호사 ☐ 영양사 2-2. 성명 2-3. 면허번호 2-4. 전문과목 2-5. 자격번호			
3. 관리방법	☐ 전화 ☐ 문자 ☐ 기타 메시지 ※ 환자관리시 관리방법은 내원 등 대면상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관리제공 대상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			
5. 환자 혈당측정 정보확인 (가장 최근 정보 기준)	5-1. 측정일자 - - 5-2. 측정방법 ☐ 자가혈당측정 ☐ 연속혈당측정 5-3. 측정결과 아침공복혈당 (최저값) mg/dl 식후 혈당 (최고값) mg/dl 적정 혈당 유지시간(TIR) %			
6. 서비스 제공내용 문항별 중복선택 가능 (기타 내용 최대 500자)	☐ 1) 혈당 모니터링 ☐ 5) 기타 ☐ 2) 혈당 관리 방법 (인슐린 주사, 인슐린 용량 조절, 기기사용법 등) ☐ 3) 저혈당 및 고혈당 대처 방법 (특별한 경우의 혈당관리 등) ☐ 4) 일상생활 관리 (식사관리, 운동, 합병증 예방 관리 등)			
7. 관리내용 이해정도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 C1. 1회 차 환자관리를 시행한 일자를 연월일(yyyy-mm-dd) 정수로 기재 또는 달력 버튼 클릭하여 일자 선택
- ➡ C2. 2-1. 관리자 직종 선택 후, 2-2. 성명 버튼 클릭하여 환자관리를 시행한 재택의료팀 인력* 선택
 - * 환자관리 시행일자 기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 된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인력이 조회됨
- C2-3. ~ C2-5. 선택된 재택의료팀 인력의 정보가 자동 생성됨(수정불가)
- ➡ C3. 환자관리에 이용한 관리방법을 선택하되,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하여 수기 입력
- ➡ C4. 환자관리를 제공한 대상을 체크하되 '환자 및 보호자' 선택 시, '환자와의 관계'를 콤보박스에서 선택
 - * (환자와의 관계) 부모/ 자식/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간병인/ 기타
- ➡ C5. 환자 혈당측정 정보는 환자관리 시 확인되는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 작성
 - C5-2. 측정(확인)방법 선택에 따라 C5-3. 측정 결과 작성
 - C5-2. 자가혈당측정 선택 시 5-3. 측정결과 (1) 아침공복혈당(최저값) 및 식후혈당(최고값) 정수로 기재
 - C5-2. 연속혈당측정 선택 시 5-3. 측정결과 (2) 적정혈당유지시간(TIR) 정수로 기재
- ➡ C6. 환자관리 내용을 모두 체크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환자관리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
- ➡ C7. 대상자의 환자관리 이해정도를 체크

D. 2회차 관리				
1. 시행일자	- -			
2. 관리자 정보	2-1. 직종	☐ 의사 ☐ 간호사 ☐ 영양사		
	2-2. 성명	2-3. 면허번호	2-4. 전문과목	2-5. 자격번호
3. 관리방법	☐ 전화 ☐ 문자 ☐ 기타 메신저			
※ 환자관리시 관리방법은 내원 등 대면상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관리제공 대상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			
5. 환자 혈당측정 정보확인 (가장 최근 정보 기준)	5-1. 측정일자	- -		
	5-2. 측정방법	☐ 자가혈당측정 ☐ 연속혈당측정		
	5-3. 측정결과	아침 공복혈당 (최저값)	mg/dl	식후 혈당 (최고값)
		적정 혈당 유지시간(TIR)	%	
6. 서비스 제공내용 문항별 중복선택 가능 (기타 내용 최대 500자)	☐ 1) 혈당 모니터링 ☐ 5) 기타			
	☐ 2) 혈당 관리 방법(인슐린 주사, 인슐린 용량 조절, 기기사용법 등)			
	☐ 3) 저혈당 및 고혈당 대처 방법(특별한 경우의 혈당관리 등)			
	☐ 4) 일상생활 관리(식사관리, 운동, 합병증 예방 관리 등)			
7. 관리내용 이해정도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D1. ~ D7. 2회 차 관리방법은 1회 차 환자관리와 작성방법 동일

E. 주요 문제 사항에 대한 증재	
1. 주요문제 현황 문항별 중복선택 가능 (기타 내용 최대 500자)	☐ 1) 저혈당 ☐ 6) 음주 및 흡연 ☐ 2) 고혈당 ☐ 7) 기타 ☐ 3) 영양 및 식사 ☐ 4) 연속혈당측정기 ☐ 5) 인슐린 자동주입기

➡ E1. 1회 차 및 2회 차 관리 내용을 종합하여 모두 선택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 선택하여 수기 입력

4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홈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인쇄

시범사업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서식명
전체

제출여부
전체

환자성명

시행일자
2020-01-01 ~ 2024-02-01

회차

의료진성명

면허번호

조회

서비스 제공 목록 조회
※ 작성 중인 경우에만 점검서식을 수정·삭제 할 수 있습니다.
엑셀업로드
엑셀저장
(총 23 건)

연번	서식명	수진자일련번호	일련번호	환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일자	수가코드	수가코드금액	의료진직종	의료진성명	의료진면허번호	시행일자	차수년도	교육회차	제출상태	최종제출
1	교육상담1	2005	3		060115	남	2022-01-14	IB611	39,380	의사			2024-02-01	3	3	최종제출	
2	교육상담1	2005	2		060115	남	2022-01-14	IB610	39,380	의사			2024-01-23	3	2	최종제출	
3	교육상담1	2005	1		060115	남	2022-01-14	IB610	39,380	의사			2024-01-22	3	1	최종제출	
4	교육상담2	2005	9		060115	남	2022-01-14	IB621	24,810	간호사			2024-01-03	2	9	최종제출	
5	교육상담2	2005	8		060115	남	2022-01-14	IB620	24,810	간호사			2024-01-01	2	8	최종제출	

가. 해당 조건별로 입력 후, **조회** 클릭 시 조회 가능

나. 대상자 조회 내역에서 ‘최종제출’ 혹은 ‘작성중’ 으로 점검서식 제출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점검서식 저장 순으로 번호 부여

다. 제출상태가 ‘작성중’ 인 경우, 해당 줄을 더블 클릭 시 서식내용 확인 · 수정 · 삭제 가능한 ‘점검서식 작성화면’ 으로 이동

라. 제출상태가 ‘최종제출’ 인 경우, 수정 및 삭제 불가

5 공지사항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상단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공지사항] 선택하여 확인

V.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1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 및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당해 기관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장소(의료기관 입구, 진료비 수납 창구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및 현황신고 의무

가. 자료제출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문서, 전자적 기록 등의 자료를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모니터링, 사업평가, 설문조사(만족도·요구도)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황신고

1) 신고 방법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인력 등 현황 제출

- 재택의료팀의 의사, 간호사, 영양사의 인력현황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재택의료팀의 필수인력의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3 연구과제 참여 협조 의무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 시범기관 및 소속 의료진은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5 제재조치 등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 공단 및 심평원은 위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가 등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 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계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VI. 시범사업 효과평가

1 평가 주체

- 시범사업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진행

2 평가 내용

- (서비스 내용) 수가별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내용
- (대상환자) 의료적 필요성, 환자 본인부담 등
- (시범사업 평가) 운영 현황 분석,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 및 건강보험 지원체계의 종합적 평가
- (기타) 그밖에 시범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평가 방법 및 시기

-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자료, 전자적으로 자동 전송된 환자 임상 수치, 진료기록, 요양기관별 소요비용 자료(비급여 포함), 요양기관 제출 점검서식 등 분석
-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환자 관리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용 등에 대해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시행

- 교육상담 현황 및 환자 관리 방법 등에 대한 파악 필요시 시범기관 방문
- 시범사업 기간 중 실시내용을 토대로 하되, 평가시기 및 기간 등은 일부 변동 가능

4 | 평가 관련 자료제출

- 시범기관은 평가 등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관련 점검 자료,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별 지 서 식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상담료 I 점검서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상담료 II 점검서

[별지 제3호 서식]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6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환자용)

[별지 제7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자용)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상담료 I 점검서				
A. 대상자 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 ~ ○*****	3. 등록 일자
4. 연령 ※ 등록일자 기준		만 ○세		
B. 임상 정보				
1. 혈당 관리				
1-1. 혈당측정 (중복 선택 가능)	☐ 자가 혈당측정 ☐ 연속혈당측정기(간헐적) ☐ 연속혈당측정기(실시간)			
1-2. 인슐린투여 방법	○ 인슐린 주사 (단독)		○ 인슐린자동주입기	
			☐ ① 인슐린주사 ☐ ② 인슐린자동주입기 (일반형) ☐ ③ 인슐린자동주입기 (센서연동형) ※ ② 또는 ③ 필수선택	
2. 당화혈색소 (최근 검사)	2-1. 시행일	- - ㉠		
	2-2. 검사결과	()%		
C. 교육 관련 사항				
1. 교육일자 및 회차	1-1. 실시일	- - ㉠		
	1-2. 시행연도	○ 초기연도 ○ 차기연도		
	1-3. 회차	㉠ ▼		
2. 교육자 정보	2-1. 직종	○ 의사		
	2-2. 성명	2-3. 면허번호	2-4. 전문과목	2-5. 자격번호
	㉠			
3. 교육대상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환자와의 관계: ㉠ ▼)			
4. 교육상담 내용 (중복 선택 가능)	☐ ① 당뇨병 이해 및 관리방법(합병증,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 ☐ ② 혈당측정 방법 및 기기사용법(측정결과 해석 등) ☐ ③ 인슐린 투약 및 용량조절(투약방법, 주의사항 등) ☐ ④ 저혈당 및 고혈당 대처법(심한 저혈당, 특별한 경우 혈당관리 등) ☐ ⑤ 식생활 / 영양 / 일상생활 관리(탄수화물 계산, 심리·사회적지지 등) ☐ ⑥ 기타()			
5. 소요시간	()분			
6. 교육자료 제공 여부	○ 제공 ○ 미 제공			
7. 교육내용 이해정도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8. 기타 기재사항	(선택기재: Text 입력)			

교육상담료 || 점검서

A. 대상자 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	3. 등록 일자	
4. 입원/외래 구분	○ 입원 ○ 외래		5. 연령 ※ 등록일자 기준	만 ○세	

B. 임상 정보

1. 혈당 관리

1-1. 혈당측정 (중복 선택 가능)	☐ 자가 혈당측정 ☐ 연속혈당측정기(간헐적) ☐ 연속혈당측정기(실시간)	
1-2. 인슐린투여 방법	○ 인슐린 주사 (단독)	○ 인슐린자동주입기
		☐ ① 인슐린주사 ☐ ② 인슐린자동주입기 (일반형) ☐ ③ 인슐린자동주입기 (센서연동형) ※ ② 또는 ③ 필수선택

2. 당화혈색소 (최근 검사)	2-1. 시행일	- -
	2-2. 검사결과	()%

C. 교육 관련 사항

1. 교육일자 및 회 차	1-1. 실시일	- -		
	1-2. 시행연도	☐ 초기연도 ☐ 차기연도		
	1-3. 회 차	▼		
2. 교육자 정보	2-1. 직종	☐ 의사 ☐ 간호사 ☐ 영양사		
	2-2. 성명	2-3. 면허번호	2-4. 전문과목	2-5. 자격번호
	🔍			

3. 교육대상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환자와의 관계:)

4. 교육상담 내용 (중복 선택 가능)	☐ ① 당뇨병 이해 및 관리방법(합병증,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 ☐ ② 혈당측정 방법 및 기기사용법(측정결과 해석 등) ☐ ③ 인슐린 투약 및 용량조절(투약방법, 주의사항 등) ☐ ④ 저혈당 및 고혈당 대처법(심한 저혈당, 특별한 경우 혈당관리 등) ☐ ⑤ 식생활 / 영양 / 일상생활 관리(탄수화물 계산, 심리·사회적지지 등) ☐ ⑥ 기타()
---	--

5. 소요시간	()분
---------	-------------

6 교육자료 제공 여부	☐ 제공	☐ 미 제공
--------------	--------------------------	----------------------------

7. 교육내용 이해정도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	--------------------------	--------------------------	--------------------------	-----------------------------

8. 기타 기재사항	(선택기재: Text 입력)
------------	-----------------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A. 대상자 정보

B. 임상 정보	
----------	--

1. **혈당 관리**

1-1. 혈당측정	☐ 자가 혈당측정 ☐ 연속혈당측정기(간헐적) ☐ 연속혈당측정기(실시간)
-----------	--

C. 1회 차 관리

1. 시행일자	- -
---------	---

3. 관리방법	☐ 전화 ☐ 문자 ☐ 기타 메신저 () ※ 문자, 메신저 등으로 관리 시 양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산정 가능
---------	---

5-1. 측정 일자	- - 
------------	---

6. 서비스 제공 내용 (중복 선택 가능)	☐ ① 혈당 모니터링 ☐ ② 혈당 관리 방법(인슐린 주사, 인슐린 용량 조절, 기기사용법 등) ☐ ③ 저혈당 및 고혈당 대처 방법(특별한 경우의 혈당관리 등) ☐ ④ 일상생활 관리(식사관리, 운동, 합병증 예방 관리 등) ☐ ⑤ 기타()	
---	---	--

- 39 -

D. 2회 차 관리				
1. 시행일자	- -			
2. 관리자 정보	2-1. 직종	○ 의사 ○ 간호사 ○ 영양사		
	2-2. 성명	2-3. 면허번호	2-4. 전문과목	2-5. 자격번호
3. 관리방법	○ 전화 ○ 문자 ○ 기타 () ※ 문자, 메신저 등으로 관리 시 양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산정 가능			
4. 관리제공 대상	○ 환자 ○ 환자 및 보호자(환자와의 관계:)			
5. 환자 혈당측정 정보 확인 (가장 최근 정보 기준)	5-1. 측정 일자	- -		
	5-2. 측정(확인) 방법	○ 자가혈당측정 ○ 연속혈당측정		
	5-3. 측정 결과	(1) 아침 공복혈당(최저값) (mg/dl) 식후 혈당(최고값) (mg/dl)		
		(2) 적정 혈당 유지시간(TIR) (%)		
6. 서비스 제공 내용 (중복 선택 가능)	☐ ① 혈당 모니터링 ☐ ② 혈당 관리 방법(인슐린 주사, 인슐린 용량 조절, 기기사용법 등) ☐ ③ 저혈당 및 고혈당 대처 방법(특별한 경우의 혈당관리 등) ☐ ④ 일상생활 관리(식사관리, 운동, 합병증 예방 관리 등) ☐ ⑤ 기타()			
7. 관리내용 이해정도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E. 주요 문제 사항에 대한 중재				
※ 1, 2회 차 관리 내용 포함하여 선택				
1. 주요 문제 현황 (문항별 중복 선택 가능)	☐ ① 저혈당 ☐ ② 고혈당 ☐ ③ 영양 및 식사 ☐ ④ 연속혈당측정기 ☐ ⑤ 인슐린 자동주입기 ☐ ⑥ 음주 및 흡연 ☐ ⑦ 기타 (text 입력)			

[별지 제4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청서

기 관 명		요양기호	
대표자명			
기관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메일주소	

본 의료기관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를 첨부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5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진찰 시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연장 시에는 청구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별지 제7호 서식]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환자용)

환자성명		생년월일	
------	--	------	--

본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환자와의 관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OO 병원장 귀하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질병치료, 진행상황 등에 대한 교육 상담을 받으시거나,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 상담 등 환자관리를 제공하며, 이에 대해 환자는 일부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은 진료의사의 판단에 의해 제공되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자용)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기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 및 관련 업무수행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 및 관련 업무수행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교육상담 I·II, 환자관리료 점검서 내용(등록일자, 혈당 관리 및 임상 검사확인, 교육일자, 교육자 정보, 교육대상, 교육상담내용, 교육내용 이해정도, 주요 문제 현황 등) 등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서비스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서비스 내용 심사 및 평가, 연구용역
제3자가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민감정보	교육상담 I·II, 환자관리료 점검서 내용(등록일자, 혈당 관리 및 임상 검사확인, 교육일자, 교육자 정보, 교육대상, 교육상담내용, 교육내용 이해정도, 주요 문제 현황 등) 등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마. 고유식별정보 처리고지사항

개인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처리사유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 및 관련 업무수행
처리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1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바.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동의여부

본인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법정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제출 요망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환자와의 관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 병원장 귀하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시범사업 대상기관 관련

Q1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 구성되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시범사업 대상 환자 관련

Q2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환자 모두 해당됩니다.(보훈환자 제외)

■ 시범사업 실시인력

Q3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의 실시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상담료 I**은 재택의료팀의 의사에 한하여 시행 가능합니다.
- **교육상담료 II**와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인 **의사, 간호사, 영양사** 중 1인이 시행 할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Q4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인력현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운영 및 인력 현황(변경 포함) 신고는 보건 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력 현황 신고 공통 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인력현황	
의사	의(약/조산)사 신고> 근무병동>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등록, 팀 전담 여부 선택 *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등록 가능
간호사	간호인력 신고> 근무병동>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등록, 팀 전담 여부 선택 ※ 단, 간호사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함
영양사	영양사/조리사 신고> 신규신고> 그 외 신고>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등록, 팀 전담 여부 선택 * 임상영양사만 등록 가능

Q5 서비스 제공인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Q6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요?

- 사업 시작일 이후 대상자에게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되는 교육상담료 점검서 및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7 환자의 연간 산정기준의 주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 환자의 시범사업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1년을 1주기로 하여 산정합니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Q8 환자의 연령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 대상자 등록일자*를 기준일로 산정합니다.
* [별지 제6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예시) 2023년 12월 2일 시범사업 참여 등록환자

구분	생년월일	만 나이
A환자	2004.12.2.	만 19세
B환자	2004.12.3.	만 18세

Q9**교육상담료 I 교육 횟수 및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연령은 대상자 등록일자 기준 만19세 미만이면서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초기연도에 한해 연 8회 이내로 산정합니다.

예시) 2023년 12월 2일 시범사업 참여한 만 19세 미만 환자

교육상담료 I	초기연도	차기연도
	2023.12.2.~2024.12.1.	2024.12.2.~시범사업 종료일
인슐린주사	6회	6회
인슐린자동주입기	8회	6회

Q10**교육상담료 II 교육 횟수 및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자 등록일자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
초기연도에는 연 12회 이내로 산정하고 차기연도부터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시에만 연 10회 이내로 산정합니다.

예시) 2023년 12월 2일 시범사업 참여한 만 19세 미만 환자

교육상담료II	초기연도	차기연도
	2023.12.2.~2024.12.1.	2024.12.2.~시범사업 종료일
인슐린주사	12회	8회
인슐린자동주입기	12회	10회

Q11

동일 날, 동일 교육자가 한 환자에게 여러 차례 시행한 교육상담Ⅱ에 대해 산정 가능한가요?

- 동일 날 동일 교육자가 한 환자에게 서로 다른 주제로 여러 차례 교육 상담 Ⅱ를 시행한 경우, **외래** 환자의 경우 **1일 2회**까지, **입원** 환자의 경우 **1일 산정횟수 제한 없이** 환자 당 연 **8회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 다만, 대상자 등록일자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 입원 환자의 경우 초기연도 연 12회 이내, 차기연도부터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시 연 10회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 동일 날 시행한 각 교육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개별적·독립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하나의 주제로 3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1번만 산정 가능합니다.

Q12

등록한 월이나 입원한 월의 환자관리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환자관리료는 집에 있는 환자를 1개월 동안 모니터링하면서, 각각 다른 일자에 **월 2회 이상**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작 월이나 환자관리 실시 중에 입원 등으로 1개월을 못 채우는 경우라도 시범사업의 탄력적 운영 및 수가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월 2회 이상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3

교육상담료 I과 교육상담료 II를 동일 날 산정 가능한가요?

- 재택의료팀의 의사가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을 **10분 이상** 실시하고,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이 기기사용법 및 질환관리 등에 대한 교육상담을 **별도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교육상담료 I, II를 모두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4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진찰료 및 그 외 의료행위·약제·치료 재료 등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나요?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이외 진료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별도 산정토록 정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시범사업 내역)과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방법

Q15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과 비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이 때,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는 “S021”을 기재하고, 총내원일수란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동일 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이 모두 발생한 환자의 청구명세서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명세서일련번호*	총내원일수	내원일자
(명세서 1) 비시범사업 명세서	00050	1	20240101
(명세서 2) 시범사업 명세서	00051	0	20240101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Q16

입원 중인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게 교육상담표를 시행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입원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속된 날짜에 교육상담표를 시행한 경우^{예1)}, 최초 교육상담을 시작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기재하고 교육상담표를 시행한 횟수 및 일수를 일투 및 총투에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속되지 않은 날짜에 교육상담표를 시행한 경우^{예2)}, 각 교육을 시행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하여 입원 명세서에 분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 입원중인 환자에게 6월 1일부터 3일간 연속된 날짜에 교육상담을 각 1회씩 총 3회 시행한 경우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입원일수	당월 요양급여일수	당월 요양개시일	1일 실시횟수	총실시일수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0	3	20240101	1	3

예시2) 입원중인 환자에게 6월 1일부터 이틀에 한 번씩 총 3일간(연속되지 않은 날짜) 각 1회씩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명세서 일련번호*	입원일수	당월요양 급여일수	당월 요양개시일	코드	1일 실시횟수	총실시일수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명세서 1)	00051	0	1	20240101	IB620	1	1
	(명세서 2)	00052	0	1	20240103	IB620	1	1
	(명세서 3)	00053	0	1	20240105	IB620	1	1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Q17

동일 날 환자에게 교육상담 또는 환자관리를 시행한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교육상담) 동일 날 외래에서 교육상담을 시행 한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입원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 외래에서 교육상담 I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입원일수	당월 요양급여일수	당월 요양개시일	코드	1일 실시횟수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0	1	20240101	IB610	1

예시2) 외래에서 교육상담 I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하여 교육상담II 시행한 경우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입원일수	당월 요양급여일수	당월 요양개시일	코드	1일 실시횟수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0	1	20240101	IB610	1
				IB620	1

- (환자관리) 비대면으로 환자관리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환자 관리료 수가는 외래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비대면으로 환자관리 후, 당일 입원한 환자에게 교육상담II를 시행한 경우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총 내원일수	당월 요양급여일수	내원일자	코드	1일 실시횟수
(명세서 1) 외래 명세서 분리청구	1	1	20240101	IB630	1
(명세서 2)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0	1	20240101	IB620	1

Q18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환자별 매월 두 번째 환자관리를 실시·기록한 일자로 작성합니다.

Q19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이증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명세서가 지급불능 처리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구분자를 삭제하여 보완청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Q20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청구 시 특정 기호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시범사업 청구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 기호 **"S021"**을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환자가 특정기호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기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Q21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가 신포괄수가 대상기관에 입원 시, 시범수가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가 신포괄 시범기관에 신포괄 질병군으로 입원하는 경우 시범사업 내역은 입원 진료내역(원청구)과 분리하여 추가 청구* 합니다.

* 청구 구분란에 "2"(추가청구) 기재

- 관련 수가는 전액 비포괄 항목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는 **"S021"**을 기재하고 총내원일수란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Q22 이중 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청구방법은 무엇인가요?

-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외의 진료내역은 공상 구분자에 보훈자격을 기재하여 신포괄수가를 적용 후 원청구하고, 재택의료 시범사업 진료내역은 공상 구분자에 보훈자격을 삭제하여 추가 청구합니다.

Q23 타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 중인 환자가 진료의뢰를 통해 외래를 방문한 경우에도 재택의료 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재택의료 관리료는 가정에 있는 환자가 시범기관의 외래 방문 또는 입원 시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정이 아닌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에 입원(요양) 중인 환자는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Q24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청구소멸 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별도로 명시된 청구소멸 시효기간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에 따라 3년 동안 청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정보시스템 관련

Q25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 대상자에게 제공한 재택의료 서비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Q26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시범사업 서식관리> 재택의료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Q27 임시저장 된 점검서식 등을 최종제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에서 '작성중' 상태의 점검서식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삭제 가능한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수정·삭제 및 최종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종 제출 시 삭제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점검서식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심평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8 교육상담 점검서 및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등록을 우선 완료해야 점검서식 신규작성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 등록 후 대상자가 해당되는 연도의 점검서식 제출횟수 클릭 시, 점검서식 신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시범사업 서식관리> 재택의료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시범사업 서식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시범사업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등록일자: 2020-01-01 ~ 2024-01-01 환자성명: 수진자 일련번호:

대상자 조회

연번	수진자 정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진자일련번호	환자명	등록일자	취수년도	생년월일	성별	교육상담1	교육상담2	환자관리	교육상담1	교육상담2	환자관리	교육상담1	교육상담2	환자관리
1	202112030001	테스트	2021-11-01	3	000001	남	0	0	0	0	0	0	0	0	0

Q29 대상자들의 점검서식을 일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화면에서 '엑셀업로드' 버튼을 클릭 시 '제출서식 일괄등록' 팝업창에서 엑셀 업로드 가능합니다.

환자명	주민번호	등록일자	서식	주기	교육자 직종	교육자 이름	면허번호	전문과목	자격번호	시행일	교육회차
김철수		20200102	교육상담 I	1	의사	김의사	123456	010100	234567	2020-01-06 월	1
오솔길		20200103	교육상담 I	2	의사	허의사	54321	011100	54321	2020-03-05 목	2

- 제출서식 선택> 엑셀다운로드 클릭> 다운받은 엑셀 양식에 해당 내용 입력> 제출서식 선택> 엑셀업로드 클릭> 저장

※ 다운받은 엑셀 양식 내 작성예시와 같은 셀 서식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업로드 된 점검서식은 임시저장 되며, 중복된 값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식은 별도 표시됩니다. 이 경우, 해당 서식의 오류 값 수정 후 최종제출 가능합니다.

- 교육상담 I, 교육상담 II 및 환자관리 서식별로 각각 엑셀업로드 필요
-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엑셀업로드 불가

■ 기타

Q30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의 경우 수가를 산정할 때마다 작성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시범사업 최초 참여 시 1회 작성합니다. 해당 서식은 기관에서 별도 보관합니다. 다만, [별지 제7호 서식]은 시범사업 기간 연장 시에는 청구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징구합니다.
-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 작성된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서식에 변경된 주민번호와 변경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보관해야하며,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신규" 대상자 등록을 한 후 점검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